

장학기금 관리 규정

제정 1996. 06. 20
제1차 개정 2007. 05. 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재학생에게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우수한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장학금을 기탁 받아 기금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장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제3조(적립금액) 외부로부터 장학금을 기탁 받아 운용하되 금액은 1억원이 될 때까지 장학금 지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4조(자금관리) 지도자 육성의 목적으로 기부, 증여, 유증 및 법인으로 부터 전입된 금액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6조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6조에 의거 교비 입금으로 관리하고 금액은 자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기금화하여 입금 적립한다.

제5조(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지급한다.

제6조 삭제 (2007.5.14)

제7조(업무처리) 기부, 증여, 유증된 금액은 장학업무 처리부서에서 경리과로 이관하여 본 규정 제3조에 의거 처리한다.

제8조(영수증 발급) 기부자에게는 본교 총장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529, 2007.5.14)

이 규정은 2007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